



## 성과급 지급규칙

규정번호	3-2-12
제정일자	2007.10.01.
개정일자	2020.03.01.
개정번호	Ver.10 총페이지 12

제정	2007년 10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5일		
개정	2008년 10월 1일		
개정	2010년 3월 12일		
개정	2011년 5월 13일		
개정	2012년 1월 16일		
개정	2012년 4월 30일		
개정	2016년 3월 1일		
개정	2019년 3월 1일		
개정	2019년 7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소속 전임교원 및 직원의 업무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지급예산)** 지급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편성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액)** 지급기준액은 제2조의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은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한다. 단, 재직기간이 2년 이하인 자, 휴직 중인 자, 강의교원, 실습전담교원 및 평가 당해 학년도 장기연수를 수행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7.1.>

② 전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한다.

1.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평가 전 학년도 2학기에 장기연수를 시작하여 평가 당해 학년도 1학기에 마친 경우

**제6조(지급등급 및 지급액)**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성과 평가)** ① 제6조의 성과급 지급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교원, 직원별로 각각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없는 경우 및 아래 각호 해당자는 총장이 [별표 3-3]에 의거 평가한다.

1. 행정처장 및 부처장
2. 학부장 및 교양과장
3. 종합정보지원실장
4. 기획처 전문위원

③ [별표 2]의 기준에 의거하여 각 평가자는 자료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며 총장은 평가결과 확인 및 최종평가 후 [별표 5]의 성과평가 등급표를 작성한다. <개정 2019.3.1.>

④ 총장은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별표 3-3]에 의거 평가한다.

**제8조(특별성과급)** 총장은 특별성과급 지급 사유 발생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3.1.>

**제9조(성과평가 대상기간)** 성과평가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업적평가는 성과급 지급학년도의 최근 직전학년도 실적으로 한다.
2. 강의평가 등 기타 사항은 성과급 지급학년도 실적으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3.1.>

## 성과급 지급 등급 및 지급액

지급등급		지 급 액
등급	지급인원	
S+ 등급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3조에서 정한 기준액의 240% 이상 해당 금액
S 등급	평가결과 상위 10% 초과 2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3조에서 정한 기준액의 200% 이상 해당 금액
A+ 등급	평가결과 상위 20% 초과 35%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3조에서 정한 기준액의 160% 이상 해당 금액
A 등급	평가결과 상위 35% 초과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3조에서 정한 기준액의 120% 이상 해당 금액
B+ 등급	평가결과 상위 50% 초과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3조에서 정한 기준액의 80% 이상 해당 금액
B 등급	평가결과 상위 60% 초과 8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3조에서 정한 기준액의 50% 이상 해당 금액
B- 등급	평가결과 상위 80% 초과 9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3조에서 정한 기준액의 30% 이상 해당 금액
C 등급	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 총장은 각 등급별로 10%의 범위 내에서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별표 2] <개정 2016.3.1.><개정 2019.3.1.><개정 2019.7.1.><개정 2020.3.1.>

## 성과 평가 기준

평가 대상		평가 부분	평가 기준	만 점
교원	개인 평가	- 교수업적평가 25% : (1 - 개별 교수업적 평가 점수 백분율/100) x 25점	25	
		- 강의평가 점수 10% : (평가 학년도 평균 강의평가점수/5) x 10점	10	
	팀 평가	- 학과 경쟁력 T점수(학과취업률, 충원율, 중도탈락률) (T점수는 학과별 일반교원확보율로 보정함)	25	
	학부장 평가	- 학과장에 대한 정성평가	20	
		- 정성평가 : [별표 2-1]	10	
	학과장 평가	- 정성평가 : [별표 2-1]	10	
- 교양과장 정성평가 : [별표 2-1]		20		
총장 평가	- 정성평가*	20		
직원	행정부서 근무직원	개인 평가	- 근무평정 결과	35
		팀 평가	- 팀별 사업성과 평가 (팀별 사업성과 보고서)	25
		학부장/부서장 평가	- 정성평가 : [별표 2-2] ※ 소속 학과장 또는 팀장이 없는 경우	20
			- 정성평가 : [별표 2-2]	10
		학과장/팀장 평가	- 정성평가 : [별표 2-2]	10
		총장 평가	- 정성평가*	20
	학부(과) 근무직원	개인 평가	- 재임용 평가결과	35
		팀 평가	- 학과 경쟁력 T점수(학과취업률, 충원율, 중도탈락률) (T점수는 학과별 일반교원확보율로 보정함)	25
		학부장/부서장 평가	- 정성평가 : [별표 2-3] ※ 소속 학과장 또는 팀장이 없는 경우	20
			- 정성평가 : [별표 2-3]	10
		학과장/팀장 평가	- 정성평가 : [별표 2-3]	10
			- 교양과장 정성평가 : [별표 2-3]	20
총장 평가	- 정성평가*	20		
※ 총장 정성평가 기준			- 교원 및 학부(과) 근무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발전 참여도(대학행사, 세미나, 연수 등)</li> <li>• 대학발전 기여도(보직, 교내사업 등)</li> <li>• 태도(교직 사명감,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학생 상담, 학생 서비스 등)</li> </ul> - 행정부서 근무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십(팀장) 혹은 친화력(직원)</li> <li>• 대학발전 기여도</li> <li>• 태도(행정 서비스 기여, 팀웍 향상 공헌 등)</li> </ul>	

※ 평가대상기간 중 인사이동을 한 직원의 팀별 사업성과 평가는 근무기간 비율 감안

[별표 2-1] <신설 2016.3.1.><개정 2019.3.1.>

### 개별 정성평가표 (교원)

성명	학부(과) 사업 참여 등	학부(과) 관련 보고서 작성 (정부재정지원 학과 관련 사업, 전공심화, 산업체위탁 등)	졸업작품전 혹은 경진대회 참가 지도	학부(과) 행사 참여도(MT, 체육대회, 동창회 등)	기타 학부(과) 발전에 대한 기여도	점수
	20	20	20	20	20	100

※ 평가표 작성 후 담당 부서에 제출

20 . . .

위 작성자

직위 :

성명 :

(인)

[별표 2-2] <신설 2016.3.1.><개정 2019.3.1.><개정 2019.7.1.>

### 개별 정성평가표 (직원)

성명	개별 정성 평가 평가기준				점수
	대학 행사 참여도 (각종 교육 및 설명회 등)	부서 행사 참여도	대학발전 기여도 (각종 TFT·위원회·정책과제 활동, 업무개선안 제시 등)	근무태도 (성실성, 친절, 업무협조, 자기계발 등)	
	25	25	25	25	100

※ 평가표 작성 후 담당 부서에 제출

위 작성자

직위 :

성명 :

(인)

[별표 2-3] <신설 2016.3.1.><개정 2019.3.1.><개정 2019.7.1.>

### 개별 정성평가표 {학부(과) 근무직원}

성명	부서 행사 참여도 (MT, 체육대회, 동창회, 부서 행사 등)	부서 행정업무 기여도	부서 발전 기여도	근무태도 (성실성, 친절, 업무협조, 자기계발 등)	점수
	25	25	25	25	100

※ 평가표 작성 후 담당 부서에 제출

20 . . .

위 작성자

직위 :

성명 :

(인)



[별표 3] 삭제 <2016.3.1.>

[별표 3-1] 삭제 <2016.3.1.>

[별표 3-2] 삭제 <2016.3.1.>

[별표 3-3]

## 성과 평정자 성과평가표

(제7조 제2항 대상자 포함)

번호	직 위	성 명	평 가 점 수	비 고

※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기재함.

※ 평가는 교직원 평가기준과 개별정성평가기준을 참작하여 작성함.

20 . . . . .

위 작성자

직위 :                                  성명 :                                  (인)

[별표 4]

## 각 팀별 사업 평가 자료

1. 팀 작성 사항

사업항목	사업목표	사업 추진내용	사업성과	비고

※ 사업항목은 대표적인 주요사업만 기재하며 일상적인 업무진행 사항은 제외함.

※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작성

20 . . . . .

위 작성자

팀명 :

팀장 :

(인)

2. 총장 평점 사항

사업항목	사업목표	사업 추진내용	사업성과	종합평가

※ 평가항목은 각각 A, B, C, D, E로 평가하여 기재함.

위 평정자

총 장 :

(인)

[별표 5] <개정 2016.3.1.>

### 성과평가 등급표

소속	직위	성명	평가점수					평가등급	비고
			개인평가	팀평가	학부장/부서장평가	총장평가	계		

※ 평가등급은 직종별로 확정한다.

총장 : (인)